제353회 서초구의회(임시회)

「2027년도 재단법인 서초복지돌봄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서초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36호)]

2026. 10.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6호		
의 안 명	2027년도 재단법인 서초복지돌봄재단 출연 동의안		
제 출 자	서초구청장(복지정책과)	**제출연월일**	2026.09.23.
위 원 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최 충 열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서초복지돌봄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목적사업 추진에 필요한 2027년도 보통재산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의 대상 : 재단법인 서초복지돌봄재단

나.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복지돌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재원) 및 제12조(출연금의 교부)

다. 출연의 필요성

○ 다양하고 복합적인 복지·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공공과 민간의 복지자원을 연계하는 복지·돌봄 전문기관으로서 재단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 서초형 통합돌봄 특화사업,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민·관 복지협력 및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지원 등 주민 체감형 복지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 지원이 필요함

3. 출연금 산출내역

○ 보통재산 : 1,440,000천원

(단위:천원)

구분	2027년(안)	주요내용
합계	1,440,000	- 보통재산 출연금 10% 감액
인건비	764,150	- 인력 충원 및 인건비 인상분 반영
운영비	539,850	- 시니어플라자 시설 관리·운영 위탁에 따른 운영비 상승
사업비	136,000	- 사업 재구조화 및 후원금재원 연계추진 등 ● 효도버스 사업종료(△404,265)/통합버스 추진 ● 총사업비 2,125,910천원 중 출연금 136,000천원, 후원금 및 자부담 1,989,910천원임

※ 2026년 보통재산 출연금 1,600,000천원 대비 160,000천원(10%) 감액

4. 출연기관 참고사항

○ 출연시기 : 2027년 중 분기별 교부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복지돌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재단위치 : 서초시니어플라자 4 · 5층 (방배중앙로 118)

○ 조직인력 : 이사회 10명, 감사 2명, 사무국 3개 팀(정원 20명, 현원 15명)

※파견공무원 2명 포함

○ 주요방향

복지의 공공성 실현	■ 서초형 복지 돌봄 특화사업 추진	■ 복지사각지대 ZERO 관계망 구축
함께하는 지역사회	■ 일상 속 기부 · 나눔 문화 확산	■ 민 · 관 · 주민간 네트워크 구축
지속 가능한 미래	■ 지역 복지 역량 강화	■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
스마트 경영시스템	■ 기관운영 효율성 제고	■ 청렴 · ESG 경영체계 강화

○ 2027년 주요 추진계획

- 서초형 통합돌봄 특화사업 확대(서초ON돌봄 4대 케어, 돌봄쉼표)
- 주민 체감형 신규 특화사업 추진(서초ON복지콜센터, 서초 병원택시)
- 방배마을이음단 운영 및 방배돌봄허브 실행체계 마련

Ⅱ 검토의견

▣ (재)서초복지돌봄재단

○ 서초복지돌봄재단은 서초구의 복지·돌봄 분야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서초시니어플라자 4·5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사회와 감사 및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 재단의 조직은 이사회와 감사, 대표이사 아래 경영지원팀·복지사업팀·돌봄사업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0명, 현원은 15명으로 파견공무원 2명이 포함되어 있고, 경영지원팀은 재단 운영 및 중장기 계획, 인사·노무·회계, 이사회 및 법인 업무 등을 담당하고, 복지사업팀은 기부금 모금과 자원 배분, 나눔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 관련 사업을 담당하며, 돌봄사업팀은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과 통합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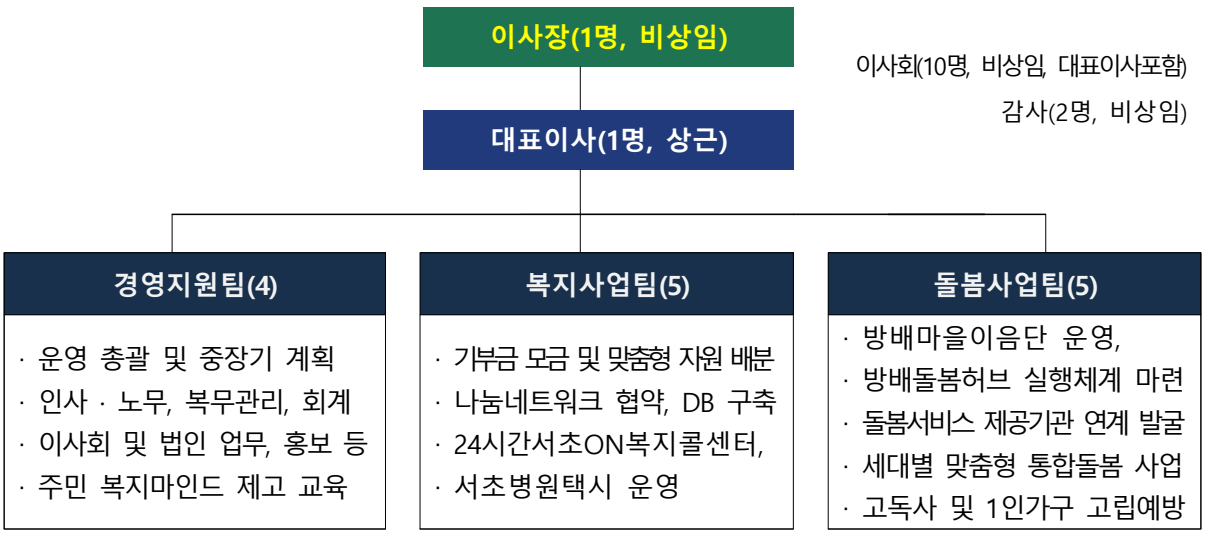
봄, 고립예방 등 돌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현황은 아래와 같음.

설립 개요

- ▢ 명　　칭: 서초복지돌봄재단
- ▢ 설립형태: 출연기관(비영리 재단법인, 공익법인)
- ▢ 재단위치: 서초시니어플라자 4,5층(서초구 방배동 820-18)
- ▢ 사업방향

복지의 공공성 실현	■ 서초형 복지 돌봄 특화사업 추진	■ 복지사각지대 ZERO 관계망 구축
함께하는 지역사회	■ 일상 속 기부 · 나눔 문화 확산	■ 민 · 관 · 주민간 네트워크 구축
지속 가능한 미래	■ 지역 복지 역량 강화	■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
스마트 경영시스템	■ 기관운영 효율성 제고	■ 청렴 · ESG 경영체계 강화

- ▢ 조직구성 : 이사회, 감사, 사무국(3개 팀, 정원 20명, 현원 15명) *※파견공무원 2명 포함*



○ 재단의 주요 기능은 △서초형 복지·돌봄 특화사업 추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관계망 구축 △기부·나눔문화 확산 △민·관·주민 간 복지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복지 역량 강화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 등

으로 구분되며, 이를 바탕으로 복지와 돌봄 분야의 지역 내 자원과 기관을 연계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특히 2027년에는 서초형 통합돌봄 특화사업과 장기요양가족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서초ON복지콜센터 및 서초 병원택시 등 주민 체감형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방배마을이음단 운영 및 방배돌봄허브 실행체계 마련, 민·관·주민 간 협력 네트워크 확대 등을 통해 지역 중심의 복지·돌봄 사업 수행기능을 강화할 계획임.

▣ 출연배경 및 취지

○ 재단 운영기반 확보

- 서초복지돌봄재단은 복지·돌봄 분야의 지역 특화사업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민·관·주민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7년에도 통합돌봄과 장기요양가족 지원, 복지콜센터 및 병원택시 등 주민 체감형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돌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이에 따라 서초구는 2027년도 재단의 기본적인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보통재산 출연금 14억 4,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재단의 지속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구가 필요로 하는 복지·돌봄 관련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임.

○ 외부재원 연계 확대

- 2027년도 출연금은 2026년도 16억원보다 1억 6,000만원 감소한 14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반면 재단 전체 사업예산은 출연금 외에 후원금, 대행사업비 및 자체재원 등을 함께 활용하는 구조로 계획되어 있음.

- 특히 2027년에는 후원금 15억 7,100만원을 비롯하여 대행사업비 3억 580만원, 자체재원 9,725만원 등을 연계하여 총 34억 1,405만원 규모의 재단 사업을 운영할 계획으로, 재단의 사업재원을 구 출연금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민간 후원과 외부재원 등을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재원구조를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사업구조 재편

- 2027년도에는 기존 사업 가운데 효도버스 사업을 종료하고 통합버스 추진 등 사업방식을 조정하는 한편, 서초ON복지콜센터, 서초 병원택시, 방배마을이음단 및 방배돌봄허브 등 지역 중심의 복지·돌봄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거나 확대할 계획임.

- 이에 따라 2027년도 출연금 중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크게 감소하는 반면, 인건비와 운영비는 증가하는 구조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재단의 사업 수행방식을 단순한 직접사업 확대보다는 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민간·외부재원의 연계,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재편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 복지·돌봄 대응 강화

- 2027년도 재단은 통합돌봄 및 장기요양가족 지원을 확대하고, 복지사각

지대 발굴과 지역 내 민·관·주민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후원·기부 자원의 발굴 및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확대할 계획임.

- 따라서 이번 출연은 단순히 재단의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데 그치기보다는, 2027년도 재단의 조직 운영과 복지·돌봄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고, 출연금과 민간 후원 및 외부재원을 연계하여 지역복지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상 출연 및 의회 의결

- 「지방재정법」 제18조[1]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2]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서초구가 서초복지돌봄재단에 2027년도 출연금을 교부하기 위해서는 출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절차가 요구되므로, 본 출연동의안은 이러한

1)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2)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지방재정법」상 출연의 요건과 의회 의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지방출자출연법상 재정지원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3]은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 제4조제1항[4]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등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바, 주민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서초복지돌봄재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은 이러한 법률상 출연기관의 사업 및 재정지원 체계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서초구 조례상 출연 근거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복지돌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재단의 기본재산 및

3)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4)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운영재원에 구의 출연금을 포함하고 있으며, 재단의 시설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구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출연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또한 해당 조례에 따라 재단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 구의 출연금 등을 규정하고 있어, 서초구가 재단의 운영과 사업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는 것은 조례에 따른 재정지원 체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법적 요건 및 절차의 충족

- 이상과 같이 본 출연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요건 및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 절차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연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복지돌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의 출연 근거를 각각 갖추고 있음.

- 따라서 2027년도 서초복지돌봄재단 보통재산 출연금 14억 4,000만원의 출연 자체에 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며, 현재 제출된 출연동의안은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 향후 2027년도 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로서 법령 및 조례상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출연금 현황

○ 출연금 규모

- 2027년도 서초복지돌봄재단 출연금은 총 14억 4,000만원으로, 재단의 2027년도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보통재산으로 출연할 예정임.

- 이번 출연금은 재단의 기본재산을 추가로 확충하기 위한 출연이 아니라, 재단의 조직 운영과 고유사업 수행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보통재산 출연금이며, 세부적으로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는바, 그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음.

출연금 산출내역

▢ **보통재산 : 1,440,000천원**

(단위: 천원)

구 분	2027년(안)	구성비	주요내용
인건비	**764,150**	**53.1%**	- 기본 급여, 제수당 등
운영비	**539,850**	**37.5%**	- 기관 및 사업 수행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되는 행정·운영·자산관리 제반 경비
사업비	**136,000**	**9.4%**	- 6개 목적사업 및 신규 사업 • 효도버스 사업종료(△404,265)/통합버스 추진 • 총사업비 2,125,910천원 중 출연금 136,000천원, 후원금 및 자부담 1,989,910천원임
합 계	**1,440,000**	**100%**	

- 출연금 가운데 인건비가 7억 6,415만원으로 전체의 53.1%를 차지하고 있고, 운영비가 5억 3,985만원으로 37.5%, 사업비가 1억 3,600만원으로 9.4%를 차지하고 있어, 출연금의 대부분이 재단의 조직 운영과 경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재단 전체 사업재원

- 한편, 재단의 2027년도 전체 사업예산은 출연금 외에 후원금, 대행사업비 및 자체재원 등을 포함하여 총 35억 2,385만원 규모로 계획되어 있으며, 재원별로는 출연금 14억 4,000만원, 후원금 16억 8,080만원, 대행사업비 3억 580만원, 자체재원 9,725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전체 사업별 출연금 배분 내역 등은 아래와 같음.

사업별 출연금 배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총사업비	출연금	후원금	대행사업비	자부담
총 계			**3,523,850**	**1,440,000**	**1,680,800**	**305,800**	**97,250**
인건비			797,090	**764,150**			32,940
운영비			600,850	**539,850**			61,000
사업비	대행사업	서초형 통합돌봄 특화사업	295,000	-	-	295,000	-
		장기요양 대상자 가족지원사업	10,800	-	-	10,800	-
	목적사업	서초형 복지돌봄 특화사업	239,310	**75,000**	161,000	-	3,310
		복지사각지대 ZERO 사업	130,000	**10,000**	120,000	-	-
		기부·나눔 문화 확산 사업	20,000	**20,000**	-	-	-
		네트워크 구축 사업	1,354,800	**5,000**	1,349,800	-	-
		지역복지 역량강화 사업	31,000	**11,000**	20,000	-	-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	45,000	**15,000**	30,000	-	-

- 이와 같이 2027년도 재단의 전체 사업재원은 구 출연금뿐만 아니라 후

원금과 대행사업비, 자체재원 등을 함께 활용하는 구조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 중 출연금은 재단 전체 재원의 일부를 구성하면서 재단의 기본적인 조직 운영과 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임.

○ 출연금 주요 용도

- 출연금 중 인건비는 재단의 인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고, 운영비는 재단 운영에 필요한 일반관리비와 시설관리, 복지콜센터 등 신규·확대 기능 수행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재단의 고유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임.

- 따라서 2027년도 출연금은 재단의 조직 및 운영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운영재원과 고유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재원을 함께 충당하는 구조로 편성되어 있으며, 후원금 등 외부재원과 대행사업비는 출연금과 별도의 재원으로 구분하여 사업별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보임.

▣ 출연의 필요성

○ 복지·돌봄 수요 대응

- 최근 지역사회에서 요구되는 복지·돌봄 서비스는 개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넘어 건강, 돌봄, 일상생활 지원 등이 연계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가구와 장기요양가족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 대한 지역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에 서초구는 이러한 복지·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돌봄, 복

지사각지대 발굴, 장기요양가족 지원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단은 이러한 사업을 민간 복지자원 및 지역 내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지속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안정적인 운영기반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전문적·통합적 기능 강화

- 서초복지돌봄재단은 서초형 복지·돌봄 특화사업,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관계망 구축, 민·관·주민 간 협력체계 구축, 기부·나눔자원 발굴 및 연계,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개별 사업을 단순히 집행하는 역할보다는 지역 내 복지자원과 기관을 연계하고 사업 간 협력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특히 2027년에는 서초ON돌봄 4대 케어와 장기요양가족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서초ON복지콜센터 및 서초 병원택시 등 주민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방배마을이음단 및 방배돌봄허브 등을 통해 지역 단위의 돌봄체계를 강화할 계획인 만큼, 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사업 수행체계의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민·관 협력 및 및 자원연계

- 지역복지 사업은 행정기관의 재정과 인력만으로 모든 복지수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과 민간단체, 주민 및 후원자원 등을 연계하여 복지서비스의 범위와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재단은 기부·후원자원 발굴과 나눔네트워크 구축, 민·관·주민 협

력체계 운영 등을 주요 기능으로 수행하고 있어, 행정의 직접적인 사업 수행과 민간의 자원 및 전문성을 연결하는 중간지원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공공재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안정적 운영기반 확보

- 재단이 수행하는 복지·돌봄 사업은 일회성 사업보다는 지속적인 관계 형성과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분야가 많아, 사업별 필요에 따라 재정지원이 단절되거나 운영기반이 불안정할 경우 사업의 연속성과 지역 내 협력체계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서초복지돌봄재단이 구의 복지·돌봄 정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복지자원을 지속적으로 연계·조정하기 위해서는 재단의 기본적인 조직 운영과 고유기능 수행에 필요한 공공재정을 일정 부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2027년도 출연은 재단의 지속적인 기능 수행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 출연의 적정성 및 타당성

○ 출연금 규모 및 재원배분의 적정성

- 2027년도 서초복지돌봄재단 출연금은 14억 4,000만원으로,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복지·돌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금의 적정성 및 타당성은 단순히 전년도 대비 증감 규모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출연금의 비목별 구성과 재단의 기능 확대에 따른 재정소요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출연을 통해 확보되는 재원이 재단의 고유기능 및 사업성과로 적절히 연결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2026~2027년 출연금 비교표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2027년(안)	증감	증감률	증감사유
총 계	1,600,000	1,440,000	△160,000	△10.0%	-
인건비	600,690	764,150	163,460	27.2%	인력 충원 및 인건비 인상분 반영
운영비	431,045	539,850	108,805	25.2%	시니어플라자 시설 관리·운영 위탁에 따른 운영비 상승
사업비	568,265	136,000	△432,265	△76.1%	사업 재구조화 및 후원금 재원 연계추진 등

-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7년도 출연금은 전년도보다 1억 6,000만원(10.0%) 감소하였으나, 세부적으로는 인건비가 1억 6,346만원(27.2%), 운영비가 1억 880만원(25.2%) 증가한 반면 사업비는 4억 3,226만 5천원(76.1%) 감소하는 구조로 편성되어 있고, 이에 따라 출연금 총액은 감소 하였음에도 재단의 고정적·경상적 운영비 성격의 지출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어,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은 총액의 증감보다는 이러한 재원 배분의 합리성을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 특히 2027년도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한 금액은 13억 4,400만원으로 전체 출연금의 93.3%를 차지하고 있어, 출연금의 대부분이 재단의 조직 및 운영을 위한 경비로 투입되는 구조라 할 것으로, 재단 설립 초기 단

계에서 조직과 기능이 확대되는 과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향후에는 경상적 운영경비의 증가가 재단의 고유사업 확대 및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돌봄서비스의 확대로 적절히 연결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의 타당성

- 인건비의 경우 2026년 출범 과정에서 일부 신규인력의 실제 근무기간만 반영되었던 인건비가 2027년에는 연간 기준으로 편성되고, 복지콜센터 및 후원 등 신규기능 확대에 따른 인력 충원이 반영된 점을 고려하면 일정 수준의 증액 요인은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는 일단 확대될 경우 지속적인 구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규인력의 업무량과 역할, 기존 인력과의 업무 중복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하여 적정 인력규모가 유지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고,

- 운영비 역시 2026년 5월부터 시작된 시니어플라자 시설관리 위탁에 따른 연간 운영비와 인력증가에 따른 법정부담금, 복지콜센터 등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공간 보수 및 전산·시설 유지비 등이 반영된 것으로, 단순한 관리·운영비 증가라기보다는 재단의 기능 및 수행범위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로 볼 여지가 있으며, 다만 시설 및 조직 확대에 따른 운영비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구 재정에서 부담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인력 활용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업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사업비 감소와 외부재원 활용

- 반면 사업비는 전년도 5억 6,826만 5천원에서 1억 3,600만원으로 대폭 감소하였는바, 이는 재단의 사업 자체가 축소되었다기보다는 2027년도 사업재원 가운데 후원금 및 대행사업비 등 다른 재원을 활용하는 구조가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사업비 감소만을 근거로 재단의 사업수행 규모가 축소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구 출연금은 재단의 기본적인 운영기반을 담당하고 개별 목적사업은 민간 후원 및 대행사업 등 외부재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재원구조를 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 이러한 재원구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하면서 재단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민간자원 연계기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이고, 특히 재단이 구 출연금에 의존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후원자원과 민·관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사업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재단의 사업수행 역량을 높이고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외부재원 확보를 전제로 사업비를 축소한 만큼 실제 후원금 및 대행사업비 확보실적이 당초 계획에 부합하는지, 외부재원 확보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구조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출연의 타당성 및 향후 관리방향

- 2027년도 출연금은 전년도보다 10% 감소한 가운데 재단의 연간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현실화하고, 사업비는 후원금 등 외부재원

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재원구조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면서 출연을 통한 기본적인 운영기반을 확보하고,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자원을 적극 연계하려는 것으로서 출연의 필요성과 기본적인 재정지원의 타당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전체 출연금의 93.3%가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향후 출연금 심사에서는 단순히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확보되었는지를 넘어 조직 및 운영비 증가에 상응하는 사업성과가 실제로 창출되고 있는지, 외부재원 확보를 통해 구 재정부담을 어느 정도 분담하고 있는지, 그리고 확대된 인력과 시설이 주민 체감형 복지·돌봄서비스 확대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성과와 재정효율성에 대한 관리가 전제된다면, 2027년도 서초복지돌봄재단 출연금은 재단의 현재 기능과 운영여건을 고려할 때 적정한 범위에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 출연의 기대효과

○ **복지·돌봄 접근성 제고:** 2027년에는 서초ON돌봄 4대 케어와 돌봄쉼표 사업을 확대하고, 서초ON복지콜센터 및 서초 병원택시 등 주민의 이용편의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바, 주민이 필요한 복지·돌봄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복지서비스의 종류와 이용절차를 알기 어려운 주민에게 상담·안내 및 서비스 연계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복지사각지대 조기발견:** 복지사각지대 ZERO 사업과 방배마을이음단, 방배돌봄허브 등의 사업을 통해 행정기관의 개별적인 복지대상자 발굴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위기가구와 돌봄 취약계층을 지역사회 관계망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서비스로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위기 발생 이후의 사후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인적·사회적 관계망을 활용한 선제적 복지 대응이 가능해져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돌봄부담 완화:** 통합돌봄 및 장기요양가족 지원사업 등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돌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특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개별 사업 단위로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원할 경우 돌봄의 단절을 줄이고 대상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지역복지 품질 향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멘토링·교육과 지원·관리 기능을 통해 상대적으로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사업수행 역량을 보완하고, 시설 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개별 시설의 역량 향상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반적인 대응력을 높여 주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위와 같은 기대효과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복지·돌봄서비스 이용자 수, 사각지대 발굴 및 연계 실적, 돌봄가족 지원성과, 민간자원 연계실적 등 사업별 구체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특히 출연을 통해 확보되는 재원이 재단의 운영에만 머무르지 않고 주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확대와 질적 향상으로 연결되는지를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종합의견

○ 서초복지돌봄재단은 지역 내 복지·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통합돌봄, 복지사각지대 발굴, 민·관·주민 간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자원 연계 등 구가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전문성과 지속성을 갖춘 별도의 수행체계를 통해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기존 사업의 조정과 함께 통합돌봄 및 장기요양가족 지원, 복지콜센터, 병원택시, 지역 단위 돌봄체계 구축 등 주민 접근성과 체감도가 높은 사업으로 기능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 이러한 기능 수행을 위해 일정 수준의 공공재정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확보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2027년도 출연금은 전년도보다 감소한 반면 인건비와 운영비는 증가하여 출연금의 대부분이 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투입되는 구조이고, 사업비는 후원금과 대행사업비 등 외부재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어 있다는 점에서, 출연의 적정성은 단순히 출연금 총액의 증감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증가한 경상적 운영비가 재단의 기능 확대와 실제 사업성과로 이어지는지, 외부재원 확보

를 통해 구 재정 부담을 적절히 분담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 특히 재단 설립 초기 단계에서 조직과 사업기능이 확대되는 과정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7년도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는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이러한 비용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직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주민에게 제공되는 복지·돌봄서비스의 양적·질적 성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후원금 및 대행사업비 등 외부재원으로 충당하는 재원구조가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2027년도 서초복지돌봄재단 출연금은 재단이 지역 복지·돌봄 분야에서 전문적·연계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재정 기반으로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는 출연금뿐만 아니라 후원금 및 대행사업비 등 재단이 확보하는 전체 재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사업 수행의 성과가 적정하게 연계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특히 재단의 사업 수행 과정에서 공공재원과 민간·외부재원이 각 기능에 맞게 합리적으로 활용되고, 이를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돌봄서비스의 확대와 실질적인 사업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상의 검토 결과,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른 출연 근거와 절차를

갖추고 있고, 재단의 설립 목적과 2027년도 사업계획에 비추어 출연을 통한 재정지원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지역 복지·돌봄 분야의 전문적 기능 수행과 민간자원 및 공공서비스의 연계를 위한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사료됨.